

行政論壇

내수용 어상자 유통과 검사

국립수산물검사소

이상준

어상자는 수산물의 보관 및 적재 운송등 유통용기로서 거래 단위의 기초가 되며 그 기능은 수산물의 선도유지 보관과 유통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. 어상자의 유통은 어획물과 같이 복합체로 유통되고 있고 그 생산 소비과정이 광범위하고 수집운반, 보관등 유통과정이 복잡하나 간단히 요약해 보면, 어장에서 어획된 어류가 입상되어 위판장에 접하(위판장에서 입상하는 경우도 있음) → 중매인에 의한 경매후 재입상 → 내륙지 위판장에서 재경매 → 도매상에 반출 → 소매과정을 통한 소비자에 분산 공급 등 현실적으로 볼 때 복잡한 유통과정을 밟아 어획물의 입상, 수송, 보관과정 중 파손, 파열 또는 비위생적으로 취급되고 있다. 수산물 유통용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수용 어상자는 구입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특성 어상자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견고성이 없어 장기간 사용 할 수 있으며 목상자의 재사용으로 인하여 위생적인 어획물의 보관 유통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으로, 견고성이 있고 어획물을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어민들이 구입에 용이한 대체 어상자의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. 목상자 이외에 합성수지상자 및 폴란지상자 등이 일부 이용되고 있으나 가격차이 등으로 이용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. 다른 수산제품의 포장용기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으나 품질보존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선어 보관 유통용 어상자는 현재까지 재래식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획물의 빙장을 감안한 적정규격 파악과 재질별 실용가치 시험 및 유생상태 비교와 선도변화 조사등 연구기관의 기술적인 조사연구로 어민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어상자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, 보급되어야 할 필요성을

강조하면서 현재 어상자 제조 유통실제 및 이의 품질검사, 제도 개요를 개관하고 어상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소견을 피력함으로서 어상자 품질개선에 조그만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.

1. 어상자 제조 및 판매

어상자 제조업 또는 중고 어상자 판매업(대여업 포함)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수산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, 시장(구청장 포함) 또는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이의 판매업을 영위하는자(어상자 제조업자 또는 어상자 판매업자)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표(1)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자격을 갖추고 신청서에 사업계획서(월별 및 년간 생산계획량, 원자재 확보방법, 어상자 판매계획)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신 어상자 판매를 영위할 수 있는자는 어상자 제조업자,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수산관계 비영리 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.

2. 내수용 어상자 검사제도

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어상자의 규격통일을 위하여 수산법 및 수산자원 보호령에 근거를 두고 1973년 4월 14일 농수산부령 제529호(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)을 제정, 어상자 제조 판매업자를 지정하고 포장 및 용기는 검사를 받아 합격된 것에 한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, 동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 9월 17일까지 사단법인 대한수산물용기협회에서 국내소비용 어상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농수산부령 제603

〈표 1〉

어상자 제조업자 및 중고어상자 판매 지정기준

구분 재질	업종 어 상 자 제 조 업		중고 어상자 판매업	
	목 재	합성수지류 및 플판지류	목 재	합성 수지류
1. 자격기준	산림법에 의한 제재 허가를 받은자, 또는 제재품을 다시 가공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일 것			
2. 시설기준				
가. 작업장	총면적 660cm ² 이 상일 것.	어상자 제조에 필요한 적당한 넓이일 것.	총 면적이 660cm ² 이 상일 것. 1. 어상자 세척에 필요한 용수시설(담수) 및 폐수, 정화시설을 갖출 것.	
나. 기계기구		어상자 제조에 필요한 기계 기구설을 갖출 것.	2. 다음의 세척 시설을 갖출 것. 가. 재질 : 콘크리트 철재 또는 목재 나. 크기 : 세척시설 1조(가로 3cm × 세로 2cm × 높이 1m 크기의 세척통 2개. 약물 소독통 1개) 이상	

표 (2-1)

어상자 품질표준 내면의 크기

명 칭	표 준 용 량 (kg)	내 면 (cm)	면 (cm)		
			길 이	너 비	높 이
1 호상자	8	57	31		6
2 호상자	15	57	35		9
3 호상자	20	61	36		10
4 호상자	40	83	43		10

※ 길이 83cm 이상 또는 중량 40kg 이상의 대형어는 이 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
호(75.8.18) 및 수산청고시 제22호(75.8.30)에 의거 1975년 9월 18일부터 국립수산물검사소가 관장, 이를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에서 본 검사 업무를 위탁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.

어상자 품질표준은 표 (2)와 같다.

가. 검사 기관

어상자 검사는 국립수산물검사소로 부터 관계

규정에 의거 검사 업무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(어상자 생산지의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)에 각각 수탁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부산지구는 종전 6개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에서 실시하여 오던 것을 검사업무 정비계획에 의해 금년 8월부터 부산공동어시장이 관장하게 하여 어상자 검사업무의 능률화 및 효율화를 기하고 있는바 현재 어상자 검사기관 지정 수협은 표 (3)과 같다.

표 (2-2)

재 질 및 두께의 품질

명 칭	두께 (mm)			품 질
	저 면	측 면	단 면	
1호상자	6 이상	9 이상	12이상	1. 절혈의 지름은 판자마다 그 너비의 1/5이내, 상자마다 판자수의 1/2이내로 할 것. 2. 못은 3.7cm 이상의 것으로 각 판자마다 가로, 세로 각 2개소 이상, 균등한 간격으로 중앙부에 타정할 것. 3. 저판의 판자 간격은 1.5cm 이내의 공간으로 균등하여야 하며 어상자 사용시의 부분 최대 간격 2.5cm 이내로 할 것. 4. 부식된 판자와 못은 없어야 하며 보충판자(종고어상자 수선시에 한한다)는 규격품으로 할 것. 5. 저판의 판자수는 5개 이내로 하고 피죽판자 수는 그중 3개 이내로 할 것. 6. 파손 및 파열이 없을 것.
2호상자				
3호상자				

표 (3)

여상자 검사기관

지정호	시도별	수협별	지번	정호	시도별	수협별	지번	정호	시도별	수협별
1	경기	인천	6	충남	보령	11	전북	부	안	제
2	"	강화	7	"	서산	12	"	김	제	진
3	"	옹진	8	"	장항	13	전남	강	포	안
4	"	화성	9	"	당진	14	"	목	신	해
5	"	근해안강방	10	전북	군산	15	"	남	기선권현망	
16	전남	영광	28	전남	근해유망	40	경남	부산	부산	공동어시장
17	"	완도	29	"	전남정치방	41	"		제1,2구잠수기	
18	"	진도	30	경남	거제	42	"		대형기저인천지소	
19	"	해남	31	"	고성	44	"		대형기저여수지소	
20	"	흑산도	32	"	양산	45-1	경기	대형기저마산지소		
21	"	거문도	33	"	마산	45-2	전남	서남구기저군산지소		
22	"	고흥	34	"	삼포	45-3	경남	서남구기저여수지소		
23	"	보성	35	"	울산	47-1	전북	서남구기저울산지소		
24	"	여수	36	"	의창	47-2	전남			
25	"	장흥	37	"	진해	47-3	경남			
26	"	광양	38	"	충무					
27	"	제3,4구잠수기	39	"	하동					

나. 검사방법

1) 어상자 검사요령 및 검사면제

내수용 어상자 검사는 추출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구분은 외관검사와 품질검사로 구분하여 외관검사는 판능검사를 말하고 품질검사는 도량형기를 사용 실측검사를 말하며, 외관검사 및 품질검사 판정기준은 표 (4) 및 표 (5)와 같이 검사 룻트를 형성하는 개수에 샘플링 개수를 추출하여 검사결과 외관 및 품질 판정기준표상

에 각각 합격 판정개수(불합격 허용수치) 이내 일때는 검사 신청량 전체가 합격으로 판정되고 외관검사 판정기준 및 품질검사 판정 기준표 중 어느 하나가 합격 판정개수를 상회할 때는 검사 신청물량 전체가 불합격이 된다. 이를 다시 외관검사는 목상자의 판자 절혈의 지름에 대한 판자너비, 판자수, 못의 타정위치 및 정확도, 부식된 판자와 못 사용여부, 저판 판자수와 피죽 판자수, 파손 및 파열 상태와 규격의 적정여부 등을 겸려하고 품질검사는 판자의 두께기준 적격

여부, 저판 판자의 간격, 사용못의 치수 적정여부, 절혈의 크기 등을 실측 판정하며 중고 어상자의 경우 세척 정도등 위생상태를 겸려 판정하게 된다.

표 (4) 외관 검사시 샘플링 및 판정기준

검사로트를 형성하는 개수	샘플링 개수	합격 판정 개수
150	3	1
151~280	13	2
281~500	20	3
501~1,200	32	5
1,201~3,200	50	7
3,201~5,000	80	10

표 (5) 품질검사시 샘플링 및 판정기준

검사로트를 형성하는 개수	샘플링 개수	합격 판정 개수
25	2	0
26~150	3	0
151~1,200	5	1
1,201~3,500	8	1
3,501~5,000	10	2

검사에 합격한 것이 아니고서는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다만,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목재 어상자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○연간 계획량 이상을 제조하여 그 제조량의 90% 이상이 검사에 합격된 때(이때에는 수협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)

○제조한 어상자의 전량을 실수요자인 어민 또는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수산관계 비영리 법인에게 공급하여 어상자의 유통 개선에 기여한 때,

2) 재검사

검사를 받은자가 불합격 판정 또는 합격의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검사 신청서에 원 검사 내용을 기재하여 재검사를 신청하고,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적부를 결정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 거부시는 그 뜻을 재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.

3. 중고 어상자 취급법

중고 어상자라 함은 이미 어상자를 용기로 사용한 바 있는 어상자를 말하며 이를 세척하지 않고 사용시는 외판상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취급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립 보건위생 및 상품가치 제고를 위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증기소독 또는 약물소독으로 어혈, 어즙등을 완전 세척하고 악취를 제거하여 일광 건조하였다가 위생적으로 처리가 된 것에 한하여 겸사후 사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척장 및 위생 처리장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어상자의 세척 정도에 따른 세균수와의 관계는 표 (6)과 같다.

세척장 및 위생 처리장 시설기준

가. 세척통 제작 : 목제, 콘크리트, 합성수지통,

나. 세척통의 크기 : 가로 3m이상×세로 1m 이상×높이 1m이상,

다. 시설기준 : 세척 시설을 1조이상 보유하여야 한다.

1조라 함은 제 1세척통, 제 2세척통 약물소독통 3개를 말한다,

라. 시설 기준에 따른 용도,

① 제 1세척통 : 어혈, 어즙등 오물 제거를 위한 세척,

② 제 2세척통 : 제 1세척통에서 세척한 어상자를 완전히 행구기 위한 세척통

③ 약물 소독통 : 제 2세척통에서 완전히 행구어진 상자를 소독하는데 사용한다.

소독하는 방법은 잔유 염소량 25~50PPM의 농도를 보유한 용수 중에서 2분이상 침지 하여야 한다.

마, 용수 : 세척 용수는 풍부하여야 하며 상수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다 다만,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할 때는 수질이 상수도수와 동등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.

바. 소독방법

① 약물(염소) 소독 : 수도수로 세척(솔로 오물제거)→깨끗이 행굼→소독수에 침지(잔유 염

소량 25~50PPM의 용액에 2분이상→수도수로 헤군후 물기제거→건조,

② 염수 소독 : 수도수로 세척→깨끗이 헹굼→염수에 침지(수도수+소금 : 달걀이 물위에 뜰 정도의 염수)→건조,

③ 일광소독 : 수도수로 세척→깨끗이 헹굼→일광 건조하여 2회이상 뒤집는다,

④ 증기 소독 : 수도수로 세척→증기로 가열→건조

표 (6) 어상자의 세척과 세균부착수(1cm²당)

어상자 세척정도	세균수(마리수)
○신조어상자	70만
○신조후 1회 사용	2천만
○1회 사용후 물세척	2백만
○중고상자 물세척	1억 7천 5백만
○중고상자 미세척	4억 5천만
○중고상자 1회 증기 소독 후	26만

4. 어상자 유통질서 확립

현재 사용중인 목상자는 과거부터 사용하여 온 상태에서 수송 및 배수만을 고려한 것으로 상품가치 제고 및 위생상태, 내구성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다. 목상자는 가격이 저렴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열전도가 느려 선도 유지가 용이하여 예로부터 많이 이용하는 실정이나 목상자에는 식품 부패균의 부착성이 있어 비위생적이고 과손이 잘되어 자주 보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 상품가치 저하등으로 합성수지 등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적으로 어획물

이 처리될 수 있는 어상자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으나 영세업체에서는 자금난등 제반문제로 개발보급이 난하여 오직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힘든 과제라 할 수 있다. 그러나 합성수지 상자로 개선할 경우 회수율은 외관의 미려로 용도가 다양하여 목상자의 70%에 펼친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있어 일시에는 목상자 절대량 보급이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. 또한 어상자의 검사절차 및 수수료 부담등으로 검사를 회피하여 비규격품을 제작 유통 소지가 충분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목상자 공급은 산림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볼 때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. 따라서 현 여건하에 어상자를 다룰때는 조심하여 다루어야 하며 입상된 어상자를 갈구리 등으로 마구 찍거나 끌고 다니 충격 및 심한 마찰로 파열, 파손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. 또한 목상자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적이며 구입 사용에 편리하고 보다 내구성이 강한 대체 어상자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

첫째 : 공급이 용이하고 사용자의 부담이 적어야 하며

둘째 : 용기로서 재질, 크기, 모양등이 적격하여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하며,

세째 : 변질, 상태변화 등이 적어 오래 쓸 수 있어야 하는 방향등으로 개발 추진되어야 그 활용성이 높아 지리라 사료된다. 목상자에 비해 합성수지 상자는 내구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용 수명이 오래 가므로 사용회수를 높혀가야만 가격면에서 대체가 가능해지리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사용 현장을 지속적인 홍보에 의해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.

찾아오는 친절봉사

청탁없는 어선검사

— 본회 선정 표어 —